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 결

사 건 2005가합82852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원고 목록과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현, 정연순

피 고 별지 피고 목록과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조경구

변 론 종 결 2007. 4. 12.

판 결 선 고 2007. 6. 28.

주 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 유

1.사안의 개요에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 YMCA, 이하 ‘피고 서울회’라고 한다)의 회원들인 원고들이 피고 서울회와 피고 서울회의 이사들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여성회원들을 총회의 구성원인 총회원으로 아니한 것이 피고 서울회의 내부규정 등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50조, 제756조 내지 민법 제35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15, 갑5호증의 1 내지 50, 갑6호증의 1 내지 4,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37,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1내지 8, 갑13, 32호증, 갑33호증의 1, 2, 갑35호증의 1 내지 8, 갑36호증의 1 내지 26, 을2, 4, 5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 을11호증의 1, 2, 3, 을12호증의 1내지 4, 을13호증의 1, 2, 을14호증, 을 15, 16, 17호증의 1, 2, 증인 임건목의 증언, 증인 김영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3호증의 1, 2, 증인 김영준의 일부 증언

(1)당사자

(가) 원고 윤치은, 박귀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여성회원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서울회의 구성원인 여성회원들이고, 원고 윤치은, 박귀태도 피고 서울회의 구성원인 남성회원들이다. 원고 여성회원들은 피고 서울회의 일반회원들로서 총회원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요건(만 19세(피고 서울회의 현재 현장) 또는 20세(제102차 정기총회에서 개정되기 이전

의 피고 서울회의 회장)이상의 기독교회 세례입교인인 자이고, 보통회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이며, 2년 이상 계속 회원으로서 피고 서울회의 활동에 참여한 자}을 갖추고 있다.

(나) 피고 서울회는 선교, 사회교육, 사회개발, 사회복지,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서울회와 피고 강태철, 최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03. 3.무렵부터, 피고 강태철, 최기준은 2004. 3.무렵부터 피고 서울회의 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다.

(2) 피고 서울회의 제100차 정기총회 이전의 회원 구성

피고 서울회의 구성원은 회원(일반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과 총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은 기본적인 의무로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다만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피고 서울회의 특정사실을 이용하거나 특정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총회원은 이사, 감사 등을 선출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와 감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2004년을 기준으로 피고 서울회의 회원은 약 36,000명이고, 그 중 총회원은 1,500여명 정도이다.)

(3) 피고 서울회의 제100차 정기총회 이전의 총회원에 관한 규정과 그 선정방법

제100차 정기총회 이전에 피고 서울회의 회장(이하 '구 회장'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총회원은 만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으로 2년 이상 계속 회원인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구성하는 총회 구성원 자격심사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다.(제12조 제1항). 또한 피고 서울회의 이사회가 제정한 서울 YMCA회원규정에 따르면, 총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총회원은 만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세례입교이고, 보통회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였으며, 2년 이상 계속회원으로 피고 서울회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회원위원의추천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6조). 이와 같은 총회원의 선정은 피고 서울회의 회원부가 매년 2월에 개최되는 피고 서울회의 정기총회 40일 전에 매년 1월에 등록된 전체 회원들 중 헌장과 회원규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회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회원의 원회에 제출하고, 회원위원회가 그들에 대해 총회원 자격의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한 다음 이사회에서 총회원으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이를 심의·의결하여 왔다. 그런데 회원부는 총회원명단을 만들면서 여성회원들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고 서울회가 1903년 창설된 이후 여성회원들은 단 1명도 총회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4) 제100차 정기총회의 결의내용

피고 서울회는 2003. 2. 22.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여성회원들도 총회원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여성회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장개정특별위원회와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피고 서울회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있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피고 서울회의 여러 가지 형태의 성차별적인 요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서울 YMCA 제100차 총회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상정된 의견을 가결하였다.

(5) 제101차 정기총회에서의 헌장개정 무산

피고 서울회의 이사회는 2003. 6. 23. 헌장개정특별위원회, 개혁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헌장개정안의 작성, 개혁과제도출, 여성의 권리 신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에 여성특별위원회는 구 헌장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제100차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여성회원이 총회원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헌장개정특별위원회에 제시하였고, 헌

장개정특별위원회는 총회원이 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로 낮추고 다른 내용은 그대로 둔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사회는 2004. 2. 28.에 개최될 제101차 정기총회에 상정할 헌장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여성회원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에 관한 제100차 정기총회의 결의문은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이를 의안으로 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성회원의 의결권 등은 헌장이 개정되어야 하며, 피고 서울회가 지난 100년 동안 남성회원들에게만 총회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역사와 관습, 여성만이 참여하여 활동하는 YWCA등을 고려하여 헌장·제도연구위원회로 하여금 전향적으로 연구, 논의하여야 한다고 결의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2004. 1. 28. 헌장개정안을 공고한 이후 제101차 정기총회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일부 여성회원들의 총회 방해로 상정되지 못하였다.

(6) 제102차 정기총회에서의 헌장개정

이사회는 다시 헌장·제도연구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2004. 12. 21. 헌장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는 총회원의 자격에 관해 구 헌장 제12조를 총회원은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이고, 보통회비 이상을 납부한 만 2년 이상 계속 회원인 사람으로 피고 서울회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회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위원회가 추진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총회원 자격심사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며(6년 연임 후 3년 입후보 금지),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는(2회 연임)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사회는 헌장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여성의 총회참여는 헌장개정 사안이므로 총회의 결의를 물어서 결정해야 하고, 제102차 정기총회에서 이사, 감사 선거시 동시 투표하여 여성의 총회참여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투표자의 과반수일 경우 차년도 헌장개정절차를 거쳐 정기총회에 반영하며,

투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를 밝기로 결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사회의 의견서를 붙여 2005. 1. 28. 헌장개정안을 공고한 이후 제102차 정기총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총회는 2005. 2. 26. 제102차 정기총회에서 상정된 헌장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총회참여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결과 총 투표수 629표 중 찬성 210표, 반대 409표, 무표 10표로 여성의 총회참여를 인정하자는 찬성표가 투표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다.

(7)제103차 정기총회에서의 헌장개정안 부결

이사회는 2006. 2. 25. 제103차 정기총회에 헌장 12조를 총회원은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이고, 보통회비 이상을 납부한 만 2년이상 계속 회원인 사람으로 피고 서울회의 활동에 참여한 남성 또는 만 19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입교인)으로서 보통회비 이상을 납부한 만 2년 이상 계속회원인 여성으로 피고 서울회의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회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위원회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총회구성원자격심사를 거쳐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630표 중 찬성 304표, 반대 300표, 기타 26표로 헌장개정 의결정족수인 출석 총회원의 2/3 이상의 결의를 얻지 못하여 헌장개정안이 부결되었다..

(8)제104차 정기총회에서의 헌장개정안 부결

이사회는 2007. 2. 24. 제104차 정기총회에 다시 헌장 제12조를 총회를 정회원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500인 이내로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의 40% 이내로 하고, 선출직 대의원은 남성과 여성 중 어느 한 성이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회 대의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 규정에 따라 선출된 사람 중 회원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최종 확정하는 내용의 헌장개정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투표결과 총 투표수 711표 중 찬성 293표, 반대 403표, 기권 13표, 무효 2표로 기타 26표로 역시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 서울회의 헌장에서 규정한 ‘사람’은 남성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나. 피고들이 피고 서울회의 구성원 중 여성회원들에 대한 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피고의 서울회의 헌장, 헌법 제11조, 제100차 정기총회의 결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피고들이 원고 여성회원들을 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 제756조 내지 민법 제35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3. 쟁정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서울회의 헌장에 정해진 ‘사람’의 해석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서울회의 내부규정인 헌장에는 총회원의 자격에 관해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이를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헌장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여성회원도 총회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들은, 관습적으로 피고 서울회가 남성단체로서 출발하여 남성단체로 유지, 운영되어온 연혁 등에 비추어, 헌장의 ‘사람’은 ‘남자’로 한정되고, 여성회원을 총회원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헌장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19. 27. 28. 29. 30호증, 갑37호증의 1, 2, 갑38호증, 갑39호증

의 1 내지 9, 갑42. 47호중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피고 서울회는 1903년 창설되었는데, 초기에는 남자만이 피고 서울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고, 1967년 헌장을 개정하기 이전에도 여전히 남자만이 정회원, 준회원, 소년회원 등의 회원이 될 수 있었으며(1967. 1. 31. 개정 전의 헌장 제8조), 총회는 정회원들 중 이사회의 심사결정한 정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제22조). 피고 서울회의 헌장은 1967. 1. 31.에 이르러 파리기준과 피고 서울회의 목적에 찬동서약하는 '사람'은 정회원, 준회원이 될 수 있고(1967. 1. 31. 개정 후의 헌장 제8조), 여전히 총회는 이사회가 심사결정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제22조).

②한편, 지역 기독교청년회(YMCA)의 연합체인 한국 YMCA 전국연맹(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1960년대 말 무렵부터 기독교청년회 회원정책에 관해 전체 회원 중 기독교인이고 남자인 총회원 혹은 정회원이라 불리는 일부 회원들만이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가지는 완전한 회원권을 가지는 점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1976년 개최된 제23차 전국대회에서 총회원을 넓게 인정하는 제도상의 연구를 이사회에 일임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마련하였다. 이사회가 분석한 1976년 남녀회원 수등 기독교청년회 현황에 의하면, 대구, 목포, 여수, 전주, 제주, 영천 기독교청년회는 그 당시 이미 여자에게도 회원권(총회원을 의미한다)을 부여하고 있었고, 1975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기독교청년회는 그 회원 총수가 34,678명, 그 중 남자가 25,216명, 여자가 9,362명이었으며, 피고 서울회는 그 회원 총수가 13,135명이고, 그 중 남자회원이 8,977명, 여자회원이 4,158명, 총회원은 632명이었는데 여성회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한국 YMCA 전국연맹은 1969년 무렵부터 회원규정에 관해 기준헌장(지역 기독교

청년회들이 각자의 헌장을 제정함에 있어 지침이 되는 헌장)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1971. 10. 15. 제21차 전국대회에서 남자만이 총회의 구성원인 총회원이 될 수 있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는 기준헌장의 회원규정(개정 전 기준헌장 제8조, 18조)을 기독교청년회의 목적에 찬동 서약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고, 다만 총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회가 심사, 결정한 정회원인 자로 구성하는 것으로(개정 후 기준헌장 제8조, 제20조)개정하였다. 현재의 기준헌장도 회원에 대해서 남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고, 다만 총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회가 심사, 결정한 총회원으로 구성되며, 비기독교인도 총회원수의 5분의 1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총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현행 기준 헌장 제7조, 제11조)하고 있다.

③ 그 후 지역 기독교청년회들은 점차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자격을 개방하여 왔고, 현재는 피고 서울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 기독교청년회들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자격을 주고 있다. 다른 지역 기독교청년회들도 회원과 총회원에 대하여 피고 서울회의 헌장 및 기준헌장과 유사한 내용의 헌장을 가지고 있고, 총회원의 자격을 남성으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④ 한편 한국 YMCA 전국연맹은 2004. 5. 15. 제37차 전국대회에서 피고 서울회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의 자격을 즉각 부여하도록 권고하였고, 2006. 6. 무렵 제38차 전국대회에서 피고 서울회가 여성회원들에 대해 총회원의 자격을 주지 않을 경우 퇴회나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실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서울회의 제104차 정기총회에서 헌장개정안이 부결되자 2006. 2. 27. 피고 서울회가 한국 YMCA 전국연맹으

로부터 퇴회되었음을 공식선언하였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서울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이 헌장과 기준헌장을 개정하게 된 경위와 그 개정내용, 1971년 기준헌장의 개정 이후 여성회원들에게 총 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지역 기독교청년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현재에 이르러 그 헌장의 내용이 피고 서울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피고 서울회를 제외한 모든 지역 기독교청년회가 여성에 대한 총회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 서울회사 남성단체로서 출발하였고, 1967년 헌장 개정 이후에도 남성회원들에게만 총회원의 자격을 주는 단체로서 유지, 운영되어 왔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서울회의 헌장 제12조에 정해진 '사람'을 '남자'로 한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는 문언의 의미 그대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서울회의 구성원인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의 자격을 주기 위해 별도로 내부규정인 헌장을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 피고들의 피고 서울회의 구성원 중 여성회원들에 대한 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피고의 서울회의 헌장, 제11조, 제100차 정기총회의 결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총회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일반회원으로서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총회원으로 선정해야 하는 지속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특히 헌장 제12조는 총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성회원들은 총회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자격요건만 갖추면 총회원으로 선정하였으면서도 여성회원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피고들의 행위는 피고 서울회의 헌장에 위반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에 반하며, 제100차 정기총

회의 결의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서울회의 헌장 및 회원규정은 헌법에서 정하는 개인의 인권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거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고, 헌장 및 회원규정에 총회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이 당연히 총회원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사회에게 회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 의견을 통해 총회원을 선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있고, 피고 서울회가 그 본질상 남성기독교인의 단체이며, 제100차 정기총회의 결의는 향후 구 헌장을 개정하겠다는 의안의 접수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남자회원들만 총회원으로 선정한 행위는 헌장과 헌법 제11조 및 제100차 정기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헌장 제12조와 피고 서울회의 회원규정은 이사회가 알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 중에서 심의, 결정하여 총회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회원 선정에 관하여 이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서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가지는 공익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와 같은 의결권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평등하며(민법 제73조 제1항 참조), 정관에 의해서도 일부의 구성원으로부터 의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 서울회의 헌장 제12조는 총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남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서울회의 이사회가 총회결의권을 가지는 총회원을 선정함에 있어 여성회원들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회원들의 총회의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 서울회의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총회원의 자격을 남자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온 잘못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성회원들에게도 총회의결권을 가지는 총회원의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에도 어긋난다.

다만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사회통합적·민주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기본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직접적으로 사인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평등권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일반 원칙(권리남용금지,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인 간에 적용될 수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헌법 제11조는 사법(私法)과 단체법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인 간의 단체의 내부관계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직접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헌법 제10조와 제119조 제1항에 정해진 계약자유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헌법 제21조에 정해진 단체의 결성·존속·활동의 자유와 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사의 자유 등의 헌법 규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여성회원들에게 피고 서울회의 총회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권리남용금지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의 사법상의 일반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들이 원고 여성회원들을 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 제756조 내지 민법 제35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원고 여성회원들에 대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심리, 결의를 한 행위가 피고 서울회의 내부규정인 헌장과 헌법 제11조 및 제100차 정기총회의 결의에 위반

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피고 이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여성회원들은 성차별과 총회원으로 선정되지 못하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원고 남성회원들도 주위 사람이 피고 서울회를 성차별하는 단체라고 비판할 때마다 그 회원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우너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의 취득과 상실(단체에 가입과 탈퇴)이 자유로운 비법인사단으로서 자율적인 법규범을 가지는 단체의 내부에 있어서 해당 규범의 운용에 관해서는 내부규율의 문제로서 그 단체의 자율적인 조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단체 내부의 결의가 현저하게 그 구성원일 일반 민사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상의 권리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 서울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임의적 단체이고, 이와 같은 피고 서울회가 그 내부규정에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총회원의 자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남성회원과 여성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서울회의 이사회에서 총회원의 자격에 관한 위과 같은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여성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나 사회적인 타당성도 없이 남성회원들과 달리 피고 서울회의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권등을 행사할 수 있는 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 여성회

원들이 단체의 구성원이 가지는 공익권 중 가장 중요한 총회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서울회의 내부에서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비법인사단의 내부분쟁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 서울회의 총회원의 지위에 따른 권리 등 피고 서울회의 특정시설을 이용하거나 특정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회원과 동일하고, 다만 이사, 감사 등을 선출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와 감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점에서 일반회원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원고 여성회원들이 피고 서울회의 총회원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총회원의 지위에 따른 피고 서울회의 총회의결권과 그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비법인사단인 피고 서울회의 내부분쟁을 넘어서 원고 여성회원들의 일반 민사법의 질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생활이나 사회생활의 권리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이사들이 피고 서울회에 대한 관계에서는 별도로 하더라도 피고 서울회의 구성원인 원고 여성회원들에 대하여 그들을 반드시 피고 서울회의 총회원으로 선정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여성회원들의 피고 서울회 내부에서의 총회의결권, 임원입후보권과 투표권의 실현이 방해되는 결과는 민사법의 법규범에 의해 방지하려고 하는 위험의 실현으로 평가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러한 이익의 침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발생할 정도의 위법한 법적인 이익침해로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의 보호목적의 범위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이사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균용 _____

 판사 박지연 _____

 판사 유상현 _____